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5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